

| | | |
|----------|------|---|
| 의안 번호 | 2218 | 【울산광역시 중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】 심사 보고서 |
|----------|------|---|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4. 2. 2.(금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4. 2. 2.(금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4. 2. 16.(금)

2. 제안설명 요지(미래전략국장 노선숙)

가. 제안이유

- 우정혁신도시에 10개의 공공기관이 입주하고 현재는 안착이 되어 지역경제 및 일자리 창출 등 공공기관과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의 목적(안 제1조)
- 노사민정의 책무(안 제2조)
- 노사민정협의회 기능, 구성, 임기, 해촉, 회의, 위원장 등의 직무, 존속기한, 의안 발의에 관한 사항(안 제3조부터 제10조까지)
- 노사민정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- 의견청취, 성실이행 의무, 수당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)

다. 근거법규

-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
-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신옥범)

- 본 조례안은 우정혁신도시에 10개의 공공기관이 입주하고 현재는 안착이 되어 지역경제 및 일자리창출 등 공공기관과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전반적으로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,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근 거 법 규

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

제3조(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,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,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(이하 “지역 노사민정”이라 한다)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2조(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, 구성 및 기능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,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(이하 “지역 노사민정”이라 한다)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-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. 다만,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(互選)하는 사람 1명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.

- ④ 협의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

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.

1.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
2.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
3.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 · 고용 · 경제 · 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4.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

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, 「고용정책기본법」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 · 군 · 구 고용심의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미 심의한 경우 협의회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
2.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
3.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· 운영, 하부 협의체 및 사무국의 설치 ·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